

We stand to make lives better!
여러분의 멋진 이민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미국비자

미국이민은 크게 취업이민과 가족초청 이민으로 나뉩니다.
취업이민은 아래와 같은 5가지 카테고리 분류됩니다.

> 비범한 능력보유자 비자 (EB-1)

과학, 예술, 교육, 사업, 체육 분야에서 탁월한 능력을 보인 자, 뛰어난 연구자나 교수, 다국적 기업의 경영간부 등의 이민

> 고학력자 비자 (EB-2)

고등 교육 과정 수준이 요구되는 고도의 전문직 종사자로서 과학, 예술, 사업 분야에서 상당한 능력을 보인 자

> 숙련직 · 비숙련직 비자 (EB-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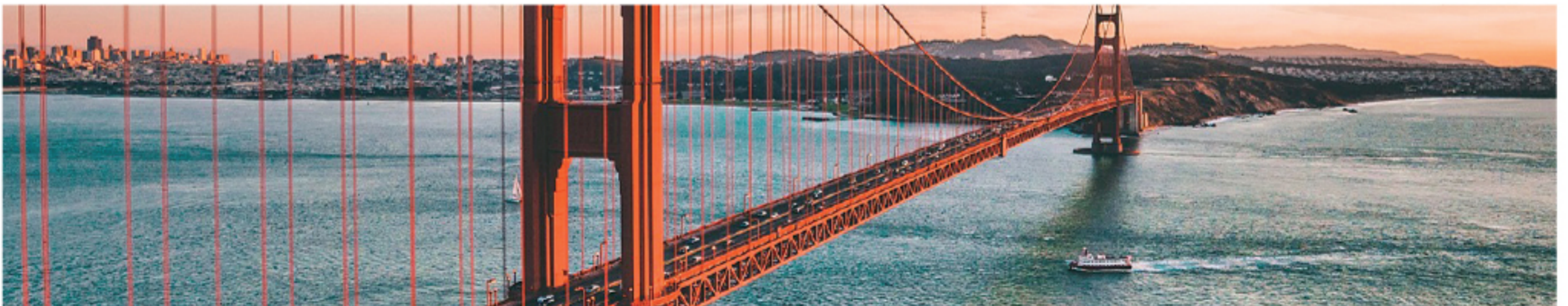
학사학위가 요구되는 직종, 적어도 2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숙련공, 혹은 미국 내에서 인력난을 겪고 있는 분야의 종사자

> 종교·의사 등 특수종사자 비자 (EB-4)

목사, 승려 등 종교인이나 의사 등

> 투자 이민 (EB-5)

투자를 통해 영주권 이민 비자를 얻는 취업이민(Employment Based Petition)의 5번째 순위로 분류되는 이민 비자



연락처 :

서울사무소 : TEL : 02) 557-5579 | FAX : 02) 557-0779

인천사무소 : TEL : 032) 715-4119 | FAX : 032) 715-4123

| 웹사이트 : www.imin1.com

비범한 능력보유자 비자 (EB-1)

신청인이 비범한 능력보유자, 걸출한 교수와 연구자, 다국적기업 이사, 경영인이면 EB-1 비자 이민 자격이 주어집니다.

> 자격기준

비범한 능력보유자	과학, 예술 교육, 사업 또는 체육 면에서 국내 또는 국제적인 명성을 얻은 걸출한 능력을 광범위한 문서화를 통해 입증해야 함. 고용제안 불필요.	아래의 10가지 판정기준 중 3가지를 충족시키거나, Pulitzer, Oscar, Olympic Medal 등을 1회 수상한 증거를 제시해야 함. 방법 : 신청인이 외국 근로자(취업이민) 청원서(Form I-140, Petition for Alien Worker)를 작성, 직접 USCIS에 제출
걸출한 교수와 연구자	특정 학술 분야 신청자의 탁월한 업적이 국제적 인정을 받아야 함. 교수 또는 연구직에서 적어도 3년간 경력 필요. 테뉴어 직을 추구하기 위해 미국 입국한다는 증거 필요. 미국 고용주의 고용제안이 있으면 되고, 노동 허가 승인 불필요.	1) 아래의 방법 2가지와 2) 잠재적 미국 고용주한테서 고용제안을 갖춰야 함 방법 : 미국 고용주가 취업이민 청원서 (I-140)를 작성, USCIS에 제출
미국 회사의 모회사, 자회사 등 경영 간부	자격 : 1) 과거 3년 중 적어도 1년간 신청인이 미국 고용주 기업에 고용되어 2) 미국 이외의 해외에서 적어도 1년간 같은 회사의 경영인(관리자), 이사직으로 근무하였고, 3) 미국입국 목적이 동기업을 위해 계속 일하기 위해서야 함. 노동허가 승인 필요 없음	증거 : 청원 고용주는 미국 회사, 그 협력사, 자회사, 지사 등으로, 1년이상 존속하였고, 해외에서 신청자를 이사, 경영 간부로 고용하였을것을 입증 방법 : 미국 고용주가 취업이민 청원서(I-140)를 USCIS에 제출

> 판정 기준

*아래의 10가지 범주 중 3가지 조건을 충족하거나, 일회성으로 Pulitzer, Oscar, Olympic Medal 등 수상을 받은 경우 "비범한 능력 보유자" 이민 자격이 인정됩니다.

1. 국내, 국제적으로 탁월성을 인정하는 상장 수상 증거
2. 회원의 뛰어난 업적을 요구하는 그 분야협회의 회원이라는 증거
3. 전문적 출간물 또는 주요한 업계 출간물이나 미디어에 실린 신청인에 관한 기사
4. 개인 또는 심사위원 패널로서 타인의 작품을 심사하도록 요청된 증거
5. 본인의 창작과학, 학술, 예술, 체육 또는 사업 관련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 공헌 입증 증거
6. 전문지, 업계 출간물 또는 주요 언론에 학술기사를 쓴 증거
7. 예술전시나 공개행사 진열장에 진열된 증거 서류
8. 유명한 조직에서 주도적 역할을 한 증거
9. 같은 분야의 타 전문가보다 높은 봉급을 받고 있다는 증거
10. 공연예술에서 상업적으로 성공한 증거

> 신청자가 걸출한 교수 또는 연구자임을 보여주는 문서 증거

- 뛰어난 성취로 주요 상장을 받은 증거
- 뛰어난 성취를 회원자격으로 요구하는 협회의 회원증
- 학술 분야에서 신청자의 저작/작품에 관해 타인이 전문적 출간물에서 실은 자료 증거
- 같은 또는 관련된 학술 분야에서 타인의 작품/저술에 대한 심사위원으로 개인 또는 심사위원패널로 참가한 증거
- 그 분야에서 창조적 과학 또는 학술연구에 공헌한 증거
- 자기 분야에서 (국제적으로 배포되는 학술지에) 학술서적 또는 논문을 쓴 증거

연락처 :

서울사무소 : TEL : 02) 557-5579 | FAX : 02) 557-0779

인천사무소 : TEL : 032) 715-4119 | FAX : 032) 715-4123

| 웹사이트 : www.imin1.com

고학력자 비자 (EB-2)

신청인이 1)고급학력(advanced degree) 또는 동등한 자격을 보유한 전문가 집단의 성원, 또는 2) 특별한 능력(exceptional ability)을 보유한 자 또는 3) 국가 이익상 노동허가증 면제(NIW)를 받을 자격이 있으면 가능합니다.

> 자격기준

고학력 (Advanced Degree)	<p>신청하는 직업은 석사 이상 고학력을 요구해야 함.</p> <p>신청인은 그 고급학력 또는 동등한 것(학부 졸업 + 그 분야 5년간의 근무경력)을 보유해야 함</p>	<p>신청하는 직업은 석사 이상 고학력을 요구한다는 증빙 필요</p> <p>신청인은 그 고급학력 또는 동등한 것(학부 졸업 + 그 분야 5년간의 근무경력)을 보유한다는 것을 입증하여야 함</p>
특별한 능력 (Exception at Ability)	<p>과학, 예술, 사업분야에서 일반적인 전문성보다 신청인이 상당히 상위라는 예외적 능력 입증.</p>	<p>아래의 판정 기준 중 적어도 3개 범주 충족 필요</p>
국가 이익상 노동허가증 면제 (NIW)	<p>신청인이 미국 국익에 합당하므로 노동허가증 면제를 요청하는 제도임. 법조문이 '국익상 면제'를 정의하지는 않으나, '예외적 능력' 보유자에게 NIW가 허여되고 그 고용이 미국에 크게 이익이 되는 경우 자격이 부여됨.</p> <p>신청인을 스폰서 할 고용주가 필요 없고, 자기 청원 할 수 있고, Form I-140(Petition for Alien Worker) 와 함께 노동허가를 이민국에 직접 제출할 수 있음.</p>	<p>아래의 판정 기준 중 적어도 3개 범주를 충족시키고 신청인이 미국에서 영구적으로 일하는 것이 국익에 합당하다는 것을 입증해야 함.</p>

> 판정 기준

- 신청인의 예외적 능력 분야에 관련된 전문대, 대학교, 학교 또는 다른 학습기관의 학위, 졸업장, 확인서, 또는 유사한 상장을 보유한다는 공식적 학위 기록
- 자기 직업에서 적어도 10년간 전업으로 일했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서한
- 자신의 전문직에서 일할 면허증 또는 자기 전문직 확인서
- 자신의 특별한 능력을 보여주는 것으로 자신이 봉급 또는 다른 보상을 누렸다는 증거
- 전문 협회 회원증
- 동료, 정부, 전문 또는 사업조직에서 자신의 업적을 인정받거나, 업계/분야에서 의미 있는 공헌을 한 사실을 인정받은 증거
- NIW자격이 있다는 다른 증거도 받아들임
- ★ 고용주 요건 : 취업기반 2순위 청원은 보통 노동부(DOL)로부터 승인된 외국인 근로 허가증(Foreign Labor Certification) 곧 Form ETA-750으로 개별적 노동승인서가 함께 제출되어야 함.
- 고학력 및 특별한 능력 카테고리의 EB-2 visa를 받으려면 고용주가 Form I-140을 이민국에 제출해야 함.
- EB-2 Visa 보유자의 21세 이하 자녀, 배우자 등 가족 - 가족은 'E-21 and E-22 immigrant status'로 입국 가능. 신청인과 배우자가 영주권자(그린카드 보유자) 지위를 신청하는 과정에서 배우자는 취업허가문서(Employment Authorization Document/EAD)를 제출할 수 있고 그것이 승인되면 취업도 가능함.

연락처 :

서울사무소 : TEL : 02) 557-5579 | FAX : 02) 557-0779

인천사무소 : TEL : 032) 715-4119 | FAX : 032) 715-4123

| 웹사이트 : www.imin1.com

숙련직 · 전문직 비자 (EB-3)

- 취업기반 이민 3순위(EB-3) - 숙련근로자, 전문가, 또는 다른 근로자일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 ‘숙련근로자’는 그 일이 일시적 또는 계절적 성격이 아니라 적어도 2년의 훈련 또는 직업 경력을 요구하는 사람입니다.
- ‘전문가’는 그 일이 적어도 미국학사 또는 동등한 외국 학위를 요구하고 그 전문직업의 구성원인 사람입니다.
- ‘다른 근로자’는 그 일이 일시적 또는 계절적 성격이 아니라 2년 이하의 훈련 또는 직업 경력을 요구하는 비숙련 노동을 제공하는 사람입니다.

> 자격기준

숙련근로자 (Skilled Worker)	신청자는 적어도 2년의 훈련 또는 직업 경력을 입증해야 함. 신청자는 미국 근로자 일손이 모자라는 일을 수행하고 있어야 함.	노동허가서와 영구적, 전일제 고용 제안서 필요
전문가 (Professional)	신청자는 미국학사 또는 동등한 외국 학위를 소지하고 있으며, 그 직군에 들기 위해서는 학사학위가 정상적 요구사항이라는 점을 입증해야 함. 신청자는 미국 근로자 일손이 모자라는 일을 수행하고 있어야 함. 신청자의 교육과 경력이 학사학위를 대체할 수는 없음.	노동허가서와 영구적, 전일제 고용 제안서 필요
비숙련 근로자 (“다른 근로자” (Other Work))	신청자는 청원서가 제출될 때 미국 근로자 일손이 모자라는 일로서 일시적 또는 계절적 성격이 아니라 (2년 이하의 훈련 또는 직업 경력을 요구하는) 비숙련 노동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함.	노동허가서와 영구적, 전일제 고용 제안서 필요

> 미국노동부 - 노동허가서

3순위 청원서는 노동부(Department of Labor) 양식(Form ETA-9089)으로 승인받은 개별적 노동허가서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Schedule A, Group I로 고려되도록 승인되지 않은 양식(Form ETA-9089)과 함께 이민국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신청과정과 방법

신청자의 고용주가 Form I-140을 제출해야 합니다.

고용주는 비자 우선 기일(visa priority date)에 고용이 제안된 일자리에 대한 임금을 지불할 수 있는 능력을 입증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고용주는 연간보고(annual report), 연방소득세 납부서(federal income tax return), 또는 재정감사서(audited financial statement)를 제출하면 됩니다.

> EB-3 Visa 보유자 가족

EB-3 Visa 보유자의 배우자는 배우자 자격 E34 (spouse of a “skilled worker” or “professional”) or EW4 (spouse of an “other worker”)으로 미국에 입국이 가능합니다

신청인이 영주권을 신청하고 있는 과정에서 배우자는 근로허가서(Employment Authorization Document/EAD)를 신청할 자격이 있습니다. 또, 21세 이하의 미성년 자녀는 E35 (“숙련근로자” 또는 “전문가”의 자녀) 또는 EW5 (“기타 근로자” 자녀)로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연락처 :

서울사무소 : TEL : 02) 557-5579 | FAX : 02) 557-0779

인천사무소 : TEL : 032) 715-4119 | FAX : 032) 715-4123

| 웹사이트 : www.imin1.com

종교·의사 등 비자 (EB-4)

> 종교·의사 등 비자(EB-4)

특수이민자는 제4 우선순위로 비자를 받습니다.

- 종교근로자
- 방송인

고용주는 특수이민자 신청양식(Form I-360, Special Immigrant)을 제출하여 신청합니다. 그러나 상황에 따라 피 고용자가 직접 자기 청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EB-4 범주는 배우자, 21세 이하 자녀 등 파생적 수혜자를 허락합니다.

고액투자자 비자 (EB-5)

> 고액투자자 비자 (EB-5)

사업가와 그 배우자 21세 이하 자녀는

- 1) 지역에 따라 미국 시민 10명 이상 직접 또는 간접 고용을 창출하는 금액인 투자금액(50만 불~100만 불)을 미국의 상업 기업에 신규사업으로 직접 투자 하는 방식으로 또는
- 2) 시민 10명 이상 직접 또는 간접 고용을 창출하는 금액인 백만불을 투자하여 이민국(USCIS)이 지역의 경제성장 촉진을 위해 승인한 지역센터프로그램(Regional Center Program)에 투자하여 그린카드(영주권)를 얻을 수 있습니다.

1992년 파일럿 프로그램 시행 후 2018. 9. 30일까지 이것을 연장하는 법(Public Law 115-141)을 대통령이 서명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연락처 :

서울사무소 : TEL : 02) 557-5579 | FAX : 02) 557-0779

인천사무소 : TEL : 032) 715-4119 | FAX : 032) 715-4123

| 웹사이트 : www.imin1.com

소액투자 · 비 이민자 비자 (E-2) - ①

> 일반적 E-2 자격요건

- 미국이 통상 및 항해조약을 맺은 한국 등 체약국 국민은 미국 사업체에 상당한 금액을 투자할 경우 E-2 조약비이민투자자로 입국이 허락됩니다.
- 자격이 주어진 조직의 일정한 근로자도 이 범주에서 자격이 주어집니다.
- 미국에서 선의 성실로 상당량의 자본(a substantial amount of capital)을 투자하였거나 하고 있는 경우
- 오직 그 투자 사업을 개발하고 경영하기 위해 입국하려고 할 것-이는 적어도 50%의 소유권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 또는 경영인 지위에서 운영통제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입증함을 통해 가능.
- 조약투자자는 그 투자금이 직·간접적으로 범죄행위의 결과로 얻은 것이 아님을 입증해야 함.

1. 미국 내에서 E-2로 신분변경 할 수 있는 사람

조약투자자가 현재 합법적으로 비 이민자 지위로 이미 미국에 있는 경우 그러한 사람은 신청양식(Form I-129)을 제출하여 E-2로 신분변경을 요청합니다. 근로자도 현재 합법적으로 비이민자 지위로 이미 미국에 있는 경우 자격 있는 고용주가 근로자를 대신하여 청원서를 제출합니다.

2. 미국 밖에서 E-2를 획득하는 경우

신청자가 미국 밖에 있는 경우 Form I-129로 E-2 신청은 할 수 없습니다. 그 대신 신청인은 자국에 있는 미국 영사관에서 신청자의 미국 사업신청이 합법적인지 사업에 필요한 서류를 구비하여 심사(Interviews)를 받아야 합니다.

비자가 나오면 신청자는 미국 입국기항지(Port of entry)에서 E-2 입국허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상당량의 자본(a substantial amount of capital)이란?

- 사업체의 성공적 운영을 위해 조약투자자의 재정 공약을 확보하는데 충분한 액수로 조약투자자가 기존기업을 매입하는데 드는 또는 새 기업을 설립하는데 드는 총액.
- 조약투자자가 그 사업체를 성공적으로 발전시키고 운영하는 가능성을 지원해줄 정도의 금액
- 액수가 더 클수록 "상당한 액"으로 간주됩니다.

"신실한 사업체(Bona fide enterprise)"는 진정한 업체로, 적극적으로 운영 중인 상업적으로 상품, 서비스를 생산하는 사업체입니다.

투자사업체는 "영세사업체(marginal enterprise)" 이어서는 안 됩니다. "영세사업체"는 조약투자자와 그 가족에게 생활비 이상의 소득을 벌게 하는 현재 또는 미래의 능력을 가지지 못한 사업체를 말합니다.

단, 현재 그러한 소득을 창출할 능력이 부족하더라도 "새로운" 사업체는 "영세사업체"로 간주되지는 않습니다. 그러한 사업체는 E-2 범주로 자격이 주어지는 날부터 5년 내에 그러한 능력을 가져야 합니다.

연락처 :

서울사무소 : TEL : 02) 557-5579 | FAX : 02) 557-0779

인천사무소 : TEL : 032) 715-4119 | FAX : 032) 715-4123

| 웹사이트 : www.imin1.com

소액투자 · 비 이민자 비자 (E-2) - ②

> 조약투자자의 근로자 E-2 자격

- E-2 주된 외국인 조약투자고용주(principal alien employer)와 동일 국적
- 관련 법 아래 피고용인(employee) 정의에 합당할 것
- 이사 또는 관리직 성격의 의무(duties of an executive or supervisory character)를 가지거나, 그보다 아래 직위일 경우 특별한 자격(special qualifications)을 가질 것

주된 외국인 조약투자고용주가 개인이 아니면, 그 조약국 국적을 가진 미국에 있는 사람이 적어도 50% 소유권을 가진 업체나 조직이어야 합니다. 소유자는 비이민자 지위를 가지고 있어야 하고 미국 밖에 있을 경우 비 이민자 조약투자자 범주가 될 수 있어야 합니다.

이사 또는 관리직 성격의 의무(duties of an executive or supervisory character)는 그 조직 또는 주요 부분의 운영에 대한 궁극적 통제권을 주는 직위이어야 합니다.

“특별한 자격(special qualifications)”은 그 피고용인의 서비스가 그 사업의 효과적 운영에 필수적인 것이어야 합니다.

> 이 자격이 인정되는 정황 :

- 피고용인의 운영 부문에 입증된 전문성 정도
- 다른 이들이 그 피고용인의 특정한 기술을 가졌는지
- 그 특별한 자격이 요구하는 급여
- 그 자격과 기술이 미국에서도 금방 구할 수 있는 것인지의 여부

> 체류 기간

최초 2년간 체류가 허가되고 매 2년씩 연장이 가능하고 연장 횟수는 제한 없습니다. 그러나, 그 지위가 끝나면 미국을 떠날 의사(intention to depart the United States)가 있어야 합니다.

E-2 비이민자가 외국으로 여행을 하고 돌아오면 자동적으로 2년 기간의 재입국이 허용됩니다. 새로이 Form I-129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 E-2 지위의 조건

E-2 피고용인은 모업체나 자업체에서 원업체와의 관계를 입증하는 등을 통해 계속 근무할 수 있습니다

이민국은 E-2 지위의 조건에 실질적인 변화가 있을 경우 이를 승인해야 합니다.

“실질적인 변화”는 합병, 자본인수, 조약투자자나 피고용자의 그 조직과의 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근본적인 변화를 말합니다. 이 경우에는 조약투자자나 피고용자가 E-2 자격이 있음을 입증하는 새로운 Form I-129를 신청비와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연락처 :

서울사무소 : TEL : 02) 557-5579 | FAX : 02) 557-0779

인천사무소 : TEL : 032) 715-4119 | FAX : 032) 715-4123

| 웹사이트 : www.imin1.com